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 설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정일하

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임순목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8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4일

3. 제안이유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위해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신기술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의 건설신기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심의사항 신설(안 제6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을 추가하여 건설신기술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인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,
-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,
- 「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」 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에 대한 심의와 자문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규정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17. 8. 14. ~ '17. 8. 20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「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을 추가하여 건설신기술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